

연금소득 과세안내

공무원연금에도
세금이 있다고요?

과세대상연금액
어떻게 계산하죠?

연금소득과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소득·세액
공제항목은
무엇인가요?

부양가족공제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지부
 Tel. 02-560-2553, 2554
 Fax. 02-560-2840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상록회관 6층

경인지부
 (인천, 경기서부) 02-560-2255
 (경기북부) 02-560-2928
 (경기남부) 02-560-2587
 Fax. 02-560-2600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508 상록회관 6층

부산지부
 (부산) 051-630-6819
 (울산, 경남) 051-630-6845
 Fax. 051-630-6878
 48743 부산광역시 동구
 조방로 4(범일동) 천우빌딩 12층

대전지부
 (대전) 042-600-0560
 (충북) 042-600-0533
 (충남) 042-600-0532
 Fax. 042-600-0501
 3526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8,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회관 6층

세종지부
 Tel. 044-410-1304
 Fax. 044-410-1320
 30103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2(어진동)
 청암빌딩 7층

광주지부
 (광주) 062-350-5062
 (전남) 062-350-5061
 Fax. 062-350-5090
 61932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52(농성동) 한국교직원공제회
 광주회관 11층

대구지부
 Tel. 053-715-5434, 5435
 Fax. 053-715-5405
 41950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로 260
 센트로팰리스 108동 3층

강원지부
 Tel. 033-854-4716
 Fax. 033-854-4717
 24436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302호

전북지부
 Tel. 063-281-7702, 7703
 Fax. 063-281-7720
 5496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3층

제주지부
 Tel. 064-802-1606
 Fax. 064-802-1650
 6356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중앙로 63(서호동) 1층

공무원연금 관련 상담은 공무원연금콜센터 **1588-4321**

연금과세 이해하기



✓ 연금소득 과세제도란?

2002년 1월 1일 시행된 제도로 재직 중 근로소득연말정산 시 납부한 기여금에 대해 소득공제혜택을 받고,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

구분	2001.12.31. 이전	2002. 1. 1. 이후
기여금 납부액	소득공제 비대상	소득공제 대상
연금 수령액	비과세	과세

※ 유족연금과 장해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 연금소득 연말정산 산정절차

구분	계산방법
1 과세대상연금액	다음 페이지(p3) 참조
2 연금소득금액	1 과세대상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3 과세표준액	2 연금소득금액 - 인적공제
4 산출세액	3 과세표준액 x 기본세율
5 결정세액(소득세)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6 연말정산액 (환급/공제)	5 결정세액(소득세+지방소득세) - 기납부액

✓ 과세대상연금액은 이렇게 계산해요!

과세대상연금액(연간) =

$$\text{연간 총연금수령액} \times \frac{\text{'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과세기간)}}{\text{총 기여금 납부월수}}$$

※ 과세대상연금액은 연금소득 중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금액입니다.

예시 월 연금액 2,400,000원



13,090,900원(과세대상연금액) =

$$28,800,000\text{원} \times \frac{180\text{개월('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396\text{개월(총 기여금 납부월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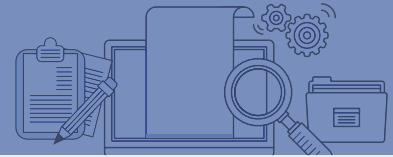
Point → 연금소득은 인적공제만 가능합니다

특별공제인 신용카드 등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관련 비용은 근로소득 공제항목입니다. 따라서 연금소득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43조의4)



소득·세액 공제항목을 알아볼까요?



✓ 인적공제

(단위 : 만원)

공제구분	요건	공제금액
기본공제	본인	소득자 본인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부양가족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존속(만60세 이상) - 직계비속(만20세 이하) - 형제자매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추가공제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70세 이상
	장애인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부녀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연간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세액공제	자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7세 이상의 자녀, 만7세 미만 취학아동 ※ 6세 이하의 자녀는 아동수당 지급 (아동수당법 제4조. '19.1.15. 개정)
	출산·입양자	당해 연도에 출산·입양자녀가 있는 경우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 동시 적용될 경우 한부모공제만 가능하고 '18년 사망한 부양가족 및 '19년 이혼한 배우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공제 대상 기준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이제한 없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 대상자

-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 능력이 없는 자 등
-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사본
- 2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의료기관명과 직인, 담당의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것)

✓ 부양가족 인적공제신청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은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므로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여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과 부양가족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주세요!

TIP

이중 공제는 NO!
직장에 다니는 자녀 등이 있다면 부양가족을 누구의 기본공제 대상으로 신고할 것인지 미리 선택해야 합니다.

✓ 표준세액공제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7만원 공제 적용됩니다.

연금과세흐름도

과세대상연금월액과 부양가족 수를 기준으로「연금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매달 연금에서 공제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1년 동안 납부 할 세액을 산정하여 매달 연금지급 시 원천징수한 세액과의 차액을 추가공제 또는 환급해 드립니다.



✓ 매월 연금에서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세는 과세대상연금월액과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를 기준으로 '연금소득간이세액표(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 제2항 별표3)'에 따라 부과되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 매월 원천징수 때에는 과세대상연금월액과 부양가족 수 및 70세 이상 경로우대 여부만 반영되고, 추가공제(장애인 등)와 표준세액공제는 연말정산 시 1회 반영됩니다.

✓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신고

매년 말에는 공단에 소득세법 제143조의6에 따른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당해연도 11월 15일 ~ 12월 31일

신고방법

〈인터넷 신고〉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연금생활자[메인 바로가기] → 연금과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지원시스템 '연금이오'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 소득공제신고

〈서면 신고〉

준비서류 :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

제출처 : 주소지를 담당하는 공단 지부

※ 공단에 최초 신고 이후 부양가족의 변동(소득요건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금을 받으면 무조건 세금이 발생하나요?

A 아닙니다. 과세대상연금액(연간)이 약 77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금이 발생하므로, 이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공단 지부에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왜 771만원이 초과하면 세금이 발생할까요?
연금소득만 있고 기본공제대상이 본인만 있을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약 771만원이면 연금소득공제 후 결정세액은 0원으로 실제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연금액		7,708,334원	비 고
공 제 액	소득단계별 공제 (연금소득 공제, 본인공제)	6,541,667원	• 연금소득공제 : 소득액이 700만원을 초과할 경우 *490만원 + 700만원 초과금액의 20% • 본인공제 : 150만원
	과세표준액	1,166,667원	과세대상연금액 - 각종소득공제
	산출세액	70,000원	과세표준액 × 세율 (1,200만원 이하는 과세표준액 의 6%)
	결정세액	0원	산출세액 - 표준세액 7만원 공제

Q 재직 중에 등록된 부양가족이 있는데, 공단에 부양가족 신고를 다시 해야 하나요?

A 네.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연금을 받은 이후 **최초 한번은 공단으로 부양가족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43조의6)
이후 변동사항이 없으면 재신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못했어요.

A 연말정산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43조의4 제3항)
신고하지 못한 사항은 **종합소득 신고기간(다음연도 5월)에 관할 세무서로 신고**하면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Q 연금소득자도 자녀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부양가족) 대상이 되나요?

A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60세 이상 (장애인인 경우 나이제한 없음)이면 대상이 됩니다.
• 연간소득금액 = 종합소득과 퇴직소득·양도소득 등 소득종류별 총소득에서 소득공제 및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의 연간합계액
■ 공무원연금소득만 수령하시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516만원 이하**이고 **만60세 이상**이면 자녀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 연금소득금액 100만원 ≙ 과세대상연금액 516만원 - 연금소득공제 416.4만원(350만원 + 350만원 초과금액의 40%)

※ 공제대상 여부 확인방법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연금생활자[메인 바로가기] → 연금과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지원시스템'연금이오'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자녀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 여부

자주 묻는 질문 FAQ

Q 2019년 2월에 퇴직을 해서 연금을 받고 있는데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네. 종합소득신고 대상입니다. 과세기간인 2019년도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으므로,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연금과세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
→ 연금생활자[메인 바로가기]
→ 연금과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지원시스템 '연금이오'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순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Q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고 하는데,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부양가족인 손자녀는 기본공제 15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만7세 이상의 자녀에 한해 추가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연금소득자도 종합소득확정 신고를 하나요?

2002년 이후 퇴직하여 연금을 받는 자가 연금 외의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을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4조, 제70조)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란?

종합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포함),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위의 소득이 2개 이상이 되는 소득자가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과세표준을 확정하는 것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연금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소득 원천징수 영수증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가지고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정신고를 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종합소득신고의 예외

- 공무원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 연금소득 외의 다른 종합소득이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
기타소득	300만원 이하
연금소득(사적연금)	1,2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일용직

- 분리과세란 종합소득 중에서 특정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를 통하여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입니다.
-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소득으로 종합소득신고 대상이 아닙니다.